

기업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

1. 개정시행일: 2017. 8. 17.

2. 개정 내용

현 행	개 정	비고
<p>제 1 조 (목적)</p> <p>① 이 약관은 (주)하나은행(이하 '은행'이라 함)과 은행이 제공하는 기업전자금융서비스(기업뱅킹, 기업뱅킹 Light, 기업모바일뱅킹, 종합자금관리(1Q bank CMS 상품군) 등 이하 '서비스'라 함)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(이하 '이용자'라 함) 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 2 조 (정의)</p> <p>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</p> <p>1. “보안매체”라 함은 은행이 이용자의 전자금융 거래 시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하여 교부하는 접근매체로서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(OTP) 등을 말합니다.</p> <p>2. “공인인증서”라 함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서명키를 담고 있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.</p> <p>3. “사용자 비밀번호”라 함은 은행이 이용자의 전자금융 거래 시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비밀번호로서 영업점 혹은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등록하는 비밀번호를 말합니다.</p> <p>4. “마스터사용자”라 함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업무권한 및 계좌권한의 전부를 가지고 다른 사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을 위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하는 자를 말합니다.</p>	<p>제 1 조 (목적)</p> <p>① 이 약관은 (주)하나은행(이하 '은행'이라 함)과 은행이 제공하는 기업전자금융서비스(기업뱅킹, 기업모바일뱅킹, 종합자금관리(1Q bank CMS) 등 이하 '서비스'라 함)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(이하 '이용자'라 함) 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</p> <p>② (좌동)</p> <p>제 2 조 (정의)</p> <p>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</p> <p>1. “보안매체”라 함은 이용자의 전자금융 거래 시 은행이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하여 교부하는 접근매체로서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(OTP) 등을 말합니다.</p> <p>2. “공인인증서”라 함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서명키를 담고 있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. 이때, 공인인증서는 사용자마다 다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.</p> <p>3. “거래지시”라 함은 사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의하여 은행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.</p> <p>4. “결재서비스”라 함은 서비스에서 별도로 정한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거래지시를 등록하는 자와 거래지시를 수락하는 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거래지시를 수락하는 자의 의사표기가 있어야 해당</p>	<p>기업뱅킹 Light 삭제, 종합자금관리 브랜드명 변경</p> <p>항번호 채번 문맥 수정</p> <p>공인인증서의 이용 주체 추가</p> <p>거래지시에 대한 용어 정의 추가</p> <p>결재서비스에 대한 용어 정의 추가</p>

기업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

현 행	개 정	비고
<p>5. <u>“일반사용자”라 함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.</u></p> <p>6. <u>기타 이 약관에서 정의하지 아니하는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,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, 기타 관련 약관 및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</u></p>	<p>전자금융거래의 거래지시가 성립하도록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.</p> <p>5. <u>“사용자”라 함은 “마스터사용자”, “결재사용자”, “단독사용자” 등 부여 받은 권한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</u></p> <p>6. <u>“마스터사용자”라 함은 사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을 위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할 수 있고 직접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에 참여할 수도 있는 자를 말합니다. 경우에 따라 권한 부여 기능만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.</u></p> <p>7. <u>“결재사용자”라 함은 서비스에서 별도로 정한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결재서비스를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한 자를 말합니다.</u></p> <p>8. <u>“단독사용자”라 함은 서비스에서 결재서비스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도록 정한 전자금융거래임에도 마스터사용자의 별도 제한이 없는 경우 결재서비스 없이 처리가 가능한 자를 말합니다.</u></p> <p>9. <u>“로그인 비밀번호”라 함은 사용자의 전자금융 거래 시 은행이 사용자 본인확인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비밀번호로서 전자적 장치를 통해 사용자가 직접 등록하는 비밀번호를 말합니다.</u></p> <p>② <u>기타 이 약관에서 정의하지 아니하는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,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, 기타 관련 약관 및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</u></p>	<p>사용자에 대한 용어 정의 추가</p> <p>마스터사용자에 대한 용어 정의 변경</p> <p>결재사용자에 대한 용어 정의 추가</p> <p>단독사용자에 대한 용어 정의 추가</p> <p>로그인 비밀번호에 대한 용어 정의 추가</p> <p>항 추가</p>
<p>제 3 조 (서비스 종류)</p> <p>이 약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각종 조회, 자금이체, 계좌의 신규 및 해지, 대출, <u>외환</u>, 전자결제, 공과금납부, 자금집금, 본지사통합관리, 통합자금관리 등이며 <u>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적 장치마다 서비스 종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안내합니다.</u></p>	<p>제 3 조 (서비스 종류)</p> <p>이 약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각종 조회, 자금이체, 계좌의 신규 및 해지, 대출, <u>외화송금</u>, <u>수출입 업무</u>, 전자결제, 공과금납부, 자금집금, 본지사통합관리, 통합자금관리 등이며 <u>은행은 필요한 경우 전자적 장치에 게시 후 이를 추가, 변경 또는 제한 할 수 있습니다.</u></p>	<p>외환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열</p> <p>서비스 종류 변경 시 게시 조항 추가</p>

기업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

현 행	개 정	비 고
<p>제 4 조 (서비스의 신청, 해지 및 추가)</p> <p>① <u>이용자는 서비스 신청서를 은행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은행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합니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 설)</p> <p>② 기존의 서비스 이용자는 별도의 서면신청 없이 서비스 상에서의 신청 및 확인절차를 거쳐 이용 가능한 서비스 매체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.</p> <p>제 5 조(사용자의 신규, 변경 및 해지)</p> <p>① <u>이용자는 서비스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마스터사용자 혹은 일반 사용자를 신규, 변경, 해지 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② 마스터사용자는 서비스에서 일반사용자를 신규, 해지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<u>서비스에서 신규한 일반사용자는 은행을 통해 보안매체를 발급받지 않는 한 단독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 설)</p>	<p>제 4 조 (서비스의 신청, 변경 및 해지)</p> <p>① <u>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, 변경 및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은행에 신청, 변경 및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</u></p> <p>② <u>이용자는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서비스 상에서 본인의 다른 서비스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③ 기존의 서비스 이용자는 별도의 서면신청 없이 서비스 상에서 신청 및 확인절차를 거쳐 이용 가능한 서비스 매체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.</p> <p>제 5 조(사용자의 신규, 변경 및 해지)</p> <p>① <u>이용자는 사용자를 신규, 변경 및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은행에 신규, 변경 및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</u></p> <p>② <u>서비스 상에서 신규한 사용자는 은행을 통해 보안매체를 발급받지 않는 한 단독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거래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.</u></p> <p>③ <u>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사용자를 서비스 상에서 해지 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사용자가 서비스 상에서 신규한 사용자로 은행을 통해 보안매체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</u> 2. <u>서비스 이용매체 변경, 서비스 통합으로 사용자의 아이디가 동일한 경우</u> 	<p>조 항목 변경</p> <p>비대면 서비스 신청, 변경, 해지 가능토록 추가</p> <p>다른 서비스 해지 기능 명문화</p> <p>비대면 사용자 신규, 변경, 해지 가능토록 추가</p> <p>서비스 상에서 신규한 사용자의 권한 명확화</p> <p>서비스 상에서 사용자 해지 할 수 있는 경우 구체화</p>

기업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

현 행	개 정	비 고
<p>② 은행은 다음 각 항목과 같이 서비스 종류별로 은행이 요구하는 해당 항목을 <u>이용자 혹은 이용자가 입력했을 때</u> 동 내용이 은행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본인으로 인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단 보안상 필요에 의해 은행이 본인확인을 위한 항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p> <p>1. 기업모바일뱅킹 : 사용자 ID, <u>사용자비밀번호</u>,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(OTP)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, 공인인증서, 계좌번호, 계좌비밀번호, 사업자번호(주민번호)</p> <p>2. 기업인터넷뱅킹 : 사용자 ID, <u>사용자비밀번호</u>,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(OTP)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, 공인인증서, 계좌번호, 계좌비밀번호, 사업자번호(주민번호)</p> <p>제 9 조 (계좌의 개설 및 해지)</p> <p>① <u>이용자는</u> 본인명의 자유입출금식예금(신탁)계좌(이하 '근거계좌'라 함)를 근거로 하여 서비스를 통해 계좌(이하 '연결계좌'라 함)를 신규개설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② ~ ⑤ (생 략)</p> <p>⑥ 인터넷을 통한 예금 또는 적금의 해지 <u>시에</u>는 은행은 <u>ARS 인증을 이용자확인방법으로 추가합니다.</u></p> <p>제 10 조 (출금계좌 및 입금계좌)</p> <p>① 계좌이체에 이용할 출금계좌는 이용자가 본인명의의 자유입출금식예금(신탁) 계좌 중에서 은행에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. <u>다만,</u></p>	<p>② 은행은 다음 각 항목과 같이 서비스 종류별로 은행이 요구하는 해당 항목을 <u>사용자가 입력했을 때</u> 동 내용이 은행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본인으로 인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단 보안상 필요에 의해 은행이 본인확인을 위한 항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p> <p>1. 기업모바일뱅킹 : 사용자 ID, <u>로그인 비밀번호</u>,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(OTP)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, 공인인증서, 계좌번호, 계좌비밀번호, 사업자번호(주민번호)</p> <p>2. 기업인터넷뱅킹 : 사용자 ID, <u>로그인 비밀번호</u>,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(OTP)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, 공인인증서, 계좌번호, 계좌비밀번호, 사업자번호(주민번호)</p> <p>제 9 조 (계좌의 개설 및 해지)</p> <p>① <u>사용자는</u> 본인명의 자유입출금식예금(신탁)계좌(이하 '근거계좌'라 함)를 근거로 하여 서비스를 통해 계좌(이하 '연결계좌'라 함)를 신규개설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② ~ ⑤ (좌 동)</p> <p>⑥ 인터넷을 통한 예금 또는 적금의 해지 <u>시에</u> 은행은 <u>본인인증수단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제 10 조 (출금계좌 및 입금계좌)</p> <p>① 계좌이체에 이용할 출금계좌는 이용자가 본인명의의 자유입출금식예금(신탁) 계좌 중에서 은행에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. <u>단, 다음</u></p>	<p>용어 변경</p> <p>용어 변경</p> <p>용어 변경</p> <p>용어 변경</p> <p>용어 변경</p> <p>추가 본인인증 선택사항으로 변경</p> <p>전자적 장치에서</p>

기업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

현 행						개 정						비고								
폰뱅킹	개인	1 일	5,000		제한없음	폰뱅킹	법인	1 회	1,000		제한없음	이체한도 적용서비스 변경 기업뱅킹 Light 내용 삭제 본지사통합관리 서								
		1 회	50	10	제한없음			1 일	5,000		제한없음									
		1 일	250	10	제한없음		개인	1 회	50	10	제한없음									
	법인	1 회	100		제한없음			1 일	250	10	제한없음									
		1 일	500		제한없음		법인	1 회	100		제한없음									
					제한없음			1 일	500		제한없음									
<p>* 1 등급 한도 이용고객은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/p> <p>* <u>기업모바일뱅킹은 기업인터넷뱅킹과 합산하여 한도 관리합니다.</u></p> <p>< 표 1-2: 전자금융 보안등급별 거래이용수단 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bottom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70%;">거래이용수단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보안등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OTP 발생기 + 공인인증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 등 급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② (생 략)</p> <p>③ <u>이용자가 기업뱅킹 Light 를 가입한 경우 영업점에서 1 회/1 일 이체 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.</u></p> <p>제 12 조 (거래지시의 처리기준) (생 략)</p> <p>제 13 조 (본지사통합관리)</p> <p>① 본지사통합관리는 <u>이용자가</u> 서비스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</p>						거래이용수단	보안등급	OTP 발생기 + 공인인증서	1 등 급	<p>* 1 등급 한도 이용고객은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/p> <p>* <u>기업전자금융서비스의 이체한도는 기업인터넷뱅킹과 합산하여 관리합니다.</u></p> <p>< 표 1-2: 전자금융 보안등급별 거래이용수단 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bottom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70%;">거래이용수단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보안등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OTP 발생기 + 공인인증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 등 급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② (좌 동)</p> <p>③ (삭 제)</p> <p>제 12 조 (거래지시의 처리기준) (좌 동)</p> <p>제 13 조 (본지사통합관리)</p> <p>① 본지사통합관리는 <u>본사 이용자가 지사 이용자의 동의를 득한 서비스</u></p>						거래이용수단	보안등급	OTP 발생기 + 공인인증서	1 등 급	
거래이용수단	보안등급																			
OTP 발생기 + 공인인증서	1 등 급																			
거래이용수단	보안등급																			
OTP 발생기 + 공인인증서	1 등 급																			

기업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

현 행	개 정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
<p>제 16 조 (이용 수수료) 이용수수료는<표 2>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 <u>이용자에게</u> 각종 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이용자의 출금계좌에서 자동출금하기로 합니다.</p> <p><표 2: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 수수료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당행이체</th> <th>타행이체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기업인터넷뱅킹</td> <td rowspan="2">무료</td> <td rowspan="2">500 원</td> <td>은행 고객등급별</td> </tr> <tr> <td>기업모바일뱅킹</td> <td>수수료 감면 제공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제 17 조 (서비스 별 이용시간) (생 락)</p> <p>제 18 조 (비밀번호 및 일회용비밀번호(OTP)의 관리)</p> <p>① <u>이용자는</u> 전자적 장치를 통해 <u>비밀번호</u>를 등록할 수 있으며, 등록된 <u>비밀번호</u>는 서비스 신청 시 지급되는 보안매체와 함께 은행직원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유출,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② <u>이용자비밀번호</u>의 조회나 확인은 불가능하며, <u>비밀번호</u>를 잊어버렸을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 또는 영업점에서 <u>비밀번호</u>를 초기화 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③ (생 락)</p>	구분	당행이체	타행이체	비고	기업인터넷뱅킹	무료	500 원	은행 고객등급별	기업모바일뱅킹	수수료 감면 제공	<p><u>다.</u></p> <p>제 16 조 (이용 수수료) 이용수수료는<표 2>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 (<u>삭 제</u>) 각종 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이용자의 출금계좌에서 자동출금하기로 합니다.</p> <p><표 2: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 수수료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수수료</th> <th>수수료인출일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타행이체</td> <td>건당 500 원</td> <td>즉시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당행집금</td> <td>건당 300 원</td> <td>익월 첫영업일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제 17 조 (서비스 별 이용시간) (좌 동)</p> <p>제 18 조 (로그인 비밀번호 및 일회용비밀번호(OTP)의 관리)</p> <p>① <u>사용자는</u> 전자적 장치를 통해 <u>로그인 비밀번호</u>를 등록할 수 있으며, 등록된 <u>로그인 비밀번호</u>는 서비스 신청 시 지급되는 보안매체와 함께 은행직원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유출,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② <u>로그인 비밀번호</u>의 조회나 확인은 불가능하며, <u>로그인 비밀번호</u>를 잊어버렸을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 또는 영업점에서 <u>로그인 비밀번호</u>를 초기화 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③ (좌 동)</p>	구분	수수료	수수료인출일	비고	타행이체	건당 500 원	즉시		당행집금	건당 300 원	익월 첫영업일		<p>예외사항 명시</p> <p>불필요한 문구 삭제,</p> <p>조 명 변경 용어변경 용어변경 용어변경 용어변경</p>
구분	당행이체	타행이체	비고																					
기업인터넷뱅킹	무료	500 원	은행 고객등급별																					
기업모바일뱅킹			수수료 감면 제공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수수료	수수료인출일	비고																					
타행이체	건당 500 원	즉시																						
당행집금	건당 300 원	익월 첫영업일																						

기업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

현 행	개 정	비고
<p>제 19 조 (서비스의 제한) 은행은 다음의 경우 당해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본인확인을 위한 <u>사용자비밀번호가</u> 일자에 관계없이 누적하여 연속 5 회, 또는 출금계좌의 비밀번호가 일자에 관계없이 누적하여 연속 3 회 잘못 입력되었을 때, 또는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(OTP)를 사용하는 경우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(OTP)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전 금융기관을 합하여 일자에 관계없이 누적하여 연속 10 회 잘못 입력되었을 때</p>	<p>제 19 조 (서비스의 제한) 은행은 다음의 경우 당해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</p> <p>1. (좌 동)</p> <p>2. 본인확인을 위한 <u>로그인 비밀번호가</u> 일자에 관계없이 누적하여 연속 5 회, 또는 출금계좌의 비밀번호가 일자에 관계없이 누적하여 연속 3 회 잘못 입력되었을 때, 또는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(OTP)를 사용하는 경우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(OTP)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전 금융기관을 합하여 일자에 관계없이 누적하여 연속 10 회 잘못 입력되었을 때</p>	용어변경
<p>제 20 조 (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) (생 략)</p>	(삭 제)	제 4 조와 내용 통합
<p>제 21 조 (약관변경) (생 략)</p>	(좌 동)	번호 변경
<p>제 22 조 (합의관할) (생 략)</p>	(좌 동).	번호 변경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: 적용